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재나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5 자 2023재나78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자 2022재나2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60155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가단212251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2. 12. 21.

판결선고 2023. 2. 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가단212251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0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에게 45,766,302원 및 그 중 7,608,317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11,848,2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12,873,525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12,208,518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227,742원에 대하여는 2010. 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2251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1. 12.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807호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2014. 6. 19.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44932호로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0. 30.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일부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 및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6015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422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5. 11. 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환송 후 항소심 변론절차에서 피고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되어 1985. 6. 30.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으면 그 부지의 소유권까지도 취득하는 것이고, 피고는 그와 같이 믿고 서울 관악구 B 대 3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C, D동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며, 피고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사.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피고가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C, D동 건물을 매수할 경우 그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된다고 믿고 위 각 건물을 매수한 것이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위 각 건물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 1)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2003비단8 등기관외의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의 결정에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등기부가 존재하므로’라고 되어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피고가 위 각 건물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 2)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서울지방법원 2003비단8 결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주장한 것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시효취득’이고, 이에 대해 재심대상판결이 ‘피고가 각 건물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명백한바, 결국 피고가 이 부분 재심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서울지방법원 2003비단8 결정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한편,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5. 11. 3.로부터 30일은 물론이고, 5년도 지난 2022. 4. 7.에야 제기되었는바,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3항, 제457조 및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여기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서울지방법원 2003비단8 결정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